
2017년 상반기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2017. 7.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순서

I. 산출 기준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	2
II-1. 전체 사건	2
II-2. 일반 사건	3
III. 용어 정의	4

I. 산출 기준

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7. 1. 1. ~ 2017. 6. 30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우측 상단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 - ‘-’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- ‘일반 사건’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이며, ‘전체 사건’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*을 갖추지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Ⅱ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Ⅱ-1. 전체 사건

(2017.1.1.~2017.6.30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 개시율	650 (56.2)	150 (66.1)	137 (45.7)	166 (61.0)	7 (63.6)	5 (83.3)	12 (57.1)	116 (55.2)	47 (52.2)	8 (47.1)	2 (100.0)	-	-	-
서울	개시 개시율	221 (56.7)	77 (66.4)	25 (41.0)	47 (61.0)	- (0.0)	4 (100.0)	1 (50.0)	49 (56.3)	13 (39.4)	4 (57.1)	1 (100.0)	-	-	-
부산	개시 개시율	43 (57.3)	6 (75.0)	7 (43.8)	14 (66.7)	-	-	1 (100.0)	12 (63.2)	2 (28.6)	1 (33.3)	-	-	-	-
인천	개시 개시율	46 (54.1)	9 (40.9)	9 (37.5)	13 (72.2)	-	-	-	7 (70.0)	7 (70.0)	1 (100.0)	-	-	-	-
대구	개시 개시율	23 (56.1)	8 (61.5)	- (0.0)	9 (56.3)	1 (50.0)	-	1 (100.0)	3 (42.9)	1 (100.0)	-	-	-	-	-
광주	개시 개시율	19 (57.6)	7 (87.5)	3 (60.0)	7 (58.3)	-	1 (100.0)	1 (50.0)	- (0.0)	- (0.0)	-	-	-	-	-
대전	개시 개시율	21 (61.8)	2 (66.7)	12 (75.0)	3 (60.0)	-	-	-	3 (42.9)	1 (50.0)	-	-	-	-	-
울산	개시 개시율	11 (73.3)	- (0.0)	3 (75.0)	7 (77.8)	-	-	-	-	-	1 (100.0)	-	-	-	-
세종	개시 개시율	- (0.0)	-	-	- (0.0)	-	-	- (0.0)	-	-	-	-	-	-	-
경기	개시 개시율	128 (54.5)	16 (61.5)	34 (42.5)	36 (59.0)	4 (100.0)	-	4 (66.7)	19 (55.9)	15 (65.2)	- (0.0)	-	-	-	-
강원	개시 개시율	16 (50.0)	- (0.0)	10 (47.6)	- (0.0)	1 (100.0)	-	-	4 (57.1)	1 (100.0)	-	-	-	-	-
충북	개시 개시율	19 (70.4)	3 (75.0)	9 (75.0)	5 (83.3)	-	-	-	1 (33.3)	1 (100.0)	- (0.0)	-	-	-	-
충남	개시 개시율	25 (65.8)	9 (100.0)	5 (71.4)	1 (25.0)	-	-	2 (50.0)	7 (58.3)	- (0.0)	1 (100.0)	-	-	-	-
전북	개시 개시율	16 (50.0)	4 (80.0)	3 (50.0)	7 (63.6)	-	-	1 (50.0)	1 (16.7)	- (0.0)	-	-	-	-	-
전남	개시 개시율	13 (56.5)	1 (100.0)	3 (37.5)	7 (63.6)	-	-	-	2 (0.0)	- (100.0)	-	-	-	-	-
경북	개시 개시율	14 (40.0)	-	5 (31.3)	5 (55.6)	-	-	-	2 (50.0)	2 (50.0)	- (0.0)	-	-	-	-
경남	개시 개시율	29 (60.4)	8 (80.0)	7 (41.2)	5 (50.0)	1 (100.0)	-	1 (100.0)	4 (66.7)	2 (100.0)	1 (100.0)	-	-	-	-
제주	개시 개시율	5 (50.0)	-	2 (33.3)	- (0.0)	-	-	-	2 (100.0)	1 (100.0)	-	-	-	-	-
기타	개시 개시율	1 (100.0)	-	-	-	-	-	-	-	1 (100.0)	-	-	-	-	-

II-2 일반 사건

(2017.1.1.~2017.6.30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치과 병원	한방 병원	요양 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약국	보건소	보건 의료원	보건 지소	조산원
계	개시	488	88	85	143	7	4	4	100	47	8	2	-	-	-	-
	개시율	(49.1)	(53.3)	(34.3)	(57.4)	(63.6)	(80.0)	(30.8)	(51.5)	(52.2)	(47.1)	(100.0)	-	-	-	-
서울	개시	166	45	13	42	-	3	-	45	13	4	1	-	-	-	-
	개시율	(49.6)	(53.6)	(26.5)	(58.3)	(0.0)	(100.0)	(0.0)	(54.2)	(39.4)	(57.1)	(100.0)	-	-	-	-
부산	개시	34	3	3	14	-	-	1	10	2	1	-	-	-	-	-
	개시율	(51.5)	(60.0)	(25.0)	(66.7)	-	-	(100.0)	(58.8)	(28.6)	(33.3)	-	-	-	-	-
인천	개시	33	2	6	11	-	-	-	6	7	1	-	-	-	-	-
	개시율	(45.8)	(13.3)	(28.6)	(68.8)	-	-	-	(66.7)	(70.0)	(100.0)	-	-	-	-	-
대구	개시	15	4	-	6	1	-	-	3	1	-	-	-	-	-	-
	개시율	(45.5)	(44.4)	(0.0)	(46.2)	(50.0)	-	-	(42.9)	(100.0)	-	-	-	-	-	-
광주	개시	16	4	3	7	-	1	1	-	-	-	-	-	-	-	-
	개시율	(53.3)	(80.0)	(60.0)	(58.3)	-	(100.0)	(50.0)	(0.0)	(0.0)	-	-	-	-	-	-
대전	개시	16	2	9	2	-	-	-	2	1	-	-	-	-	-	-
	개시율	(55.2)	(66.7)	(69.2)	(50.0)	-	-	(0.0)	(33.3)	(50.0)	-	-	-	-	-	-
울산	개시	9	-	2	6	-	-	-	-	-	1	-	-	-	-	-
	개시율	(69.2)	(0.0)	(66.7)	(75.0)	-	-	-	-	-	(100.0)	-	-	-	-	-
세종	개시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
	개시율	(0.0)	-	-	(0.0)	-	-	-	(0.0)	-	-	-	-	-	-	-
경기	개시	94	8	18	31	4	-	-	18	15	-	-	-	-	-	-
	개시율	(46.8)	(44.4)	(28.1)	(55.4)	(100.0)	-	(0.0)	(54.5)	(65.2)	(0.0)	-	-	-	-	-
강원	개시	14	-	9	-	1	-	-	3	1	-	-	-	-	-	-
	개시율	(46.7)	(0.0)	(45.0)	(0.0)	(100.0)	-	-	(50.0)	(100.0)	-	-	-	-	-	-
충북	개시	13	2	5	4	-	-	-	1	1	-	-	-	-	-	-
	개시율	(61.9)	(66.7)	(62.5)	(80.0)	-	-	-	(33.3)	(100.0)	(0.0)	-	-	-	-	-
충남	개시	20	8	4	-	-	-	1	6	-	1	-	-	-	-	-
	개시율	(60.6)	(100.0)	(66.7)	(0.0)	-	-	(33.3)	(54.5)	(0.0)	(100.0)	-	-	-	-	-
전북	개시	13	4	3	5	-	-	-	1	-	-	-	-	-	-	-
	개시율	(44.8)	(80.0)	(50.0)	(55.6)	-	(0.0)	(0.0)	(16.7)	(0.0)	-	-	-	-	-	-
전남	개시	9	-	2	6	-	-	-	1	-	-	-	-	-	-	-
	개시율	(47.4)	-	(28.6)	(60.0)	-	-	(0.0)	(100.0)	-	-	-	-	-	-	-
경북	개시	10	-	2	5	-	-	-	1	2	-	-	-	-	-	-
	개시율	(32.3)	-	(15.4)	(55.6)	-	-	-	(33.3)	(50.0)	(0.0)	-	-	-	-	-
경남	개시	22	6	5	4	1	-	1	2	2	-	1	-	-	-	-
	개시율	(53.7)	(75.0)	(33.3)	(44.4)	(100.0)	-	(100.0)	(50.0)	(100.0)	-	(100.0)	-	-	-	-
제주	개시	3	-	1	-	-	-	-	1	1	-	-	-	-	-	-
	개시율	(37.5)	-	(20.0)	-	(0.0)	-	-	(100.0)	(100.0)	-	-	-	-	-	-
기타	개시	1	-	-	-	-	-	-	-	1	-	-	-	-	-	-
	개시율	(100.0)	-	-	-	-	-	-	-	(100.0)	-	-	-	-	-	-

Ⅲ. 용어 정의

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치과의원

-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한의원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

○ 조산원

-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·해산부·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·상담을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2호)